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43호

2015년 6월 19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5-	940호	도로계획시설[도로:결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2
○ 공고 제2015-	9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325, 1-326, 2-613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8
○ 공고 제2015-	976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10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5-	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5-	1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5-	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8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5-	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6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5-	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3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5-	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66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5-	18호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78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5-	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9
○ 남 동 구 의 회 공고 제2015-	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6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39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93

고 시

○ 고시 제2015-	81호	도로명주소 고시	94
○ 고시 제2015-	8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97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940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결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5. 6.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결재지구 소3-1호선)
 - 명 칭 : 결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3-1호선 B=6.0m, L=289.8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14번지 일원
5. 보 상 시 기 : 2015. 8월 ~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서창동 52-1번지 외 21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15. 06. 18. - 2015. 07. 06(18일간)
11.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1)

공사명 : 결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잔여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 관계	
1	서창동	614	도	40.6	40.6			인천광역시남*구					
2	서창동	536-1	도	22	22			인천광역시남*구					
3	서창동	508-9	천	197	197			인천광역시남*구					
4	서창동	52-1	전	5	5			김*수	인천광역시남동구결재천로39번길* (서창동)				
5	서창동	52	전	332		3		김*수	인천광역시남동구결재천로39번길* (서창동)				
6	서창동	508-23	천	28		8		국(건*부)					
7	서창동	508-26	천	282	282			국(건*부)					
8	서창동	508-24	천	24		6		국(건*부)					
9	서창동	508-25	천	21		11		국(건*부)					
10	서창동	66-2	전	5	5			이*숙	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	남동농협협동조합	만수동 1014-1		
11	서창동	66	전	743		34		이*숙	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	남동농협협동조합	만수동 1014-1		
12	서창동	66-1	전	52	52			이*숙	인천광역시서구석남동****-	남동농협협동조합	만수동 1014-1		
소 계				1,752	603.6	62.0							

용 지 조 서 (2)

공사명 :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잔여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도로 내	도로 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3	서창동	536-6	도	32	32		-	국(건*부)					
14	서창동	54-1	대	12	12		-	박*국	시영아파트***동***호				
15	서창동	65-1	대	32	32		-	현*이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석원빌 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16	서창동	69-4	대	29	29		-	김*영	인천광역시장수동주공아파트*** -***				
17	서창동	62-4	대	157	157		-	경*****중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18	서창동	62-2	대	1,149.00		58	1,091.00	경*****중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19	서창동	69-5	대	2	2		-	김*숙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햇빛마을벽산아파트***~****	1.주식회사국민은행 2.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1.서울중구남대문로2가9-1 2.인천동구셋골로174(송림동)		
20	서창동	71-10	대	19	19		-	이*순	인천광역시남동구걸재천로39번 길** (서창동)	남동농협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1014-1		
21	서창동	71-6	도	41	41		-	이*순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남동농협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1014-1		
22	서창동	69-6	대	28	22		6	백*흠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넛마을 신영지웰아파트***~****	1.동화기업주식회사 2.주식회사대진	1.서구가정로97번길28(가좌동) 2.아산군음봉면소동리327		
23	서창동	71-12	도	18	18		-	유*기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브 라운스톤일산***~****				
24	서창동	71-13	대	26	26		-	신*선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소 계				1,545	390.0	58.0							
합 계				3,297	993.6	120.0							

용 지 조 서 (3)

공사명 : 결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잔여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도로내	도로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5	서창동	71-11	목	84	84		-	신*선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26	서창동	520-13	도	659	659		-	국(건*부)					
27	서창동	520-4	도	1,553.00		54	1,499.00	국(건*부)					
28	서창동	73-2	전	50	50		-	김*석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29	서창동	73-1	전	657		30	627	김*석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30	서창동	74-1	전	1	1		-	김*례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31	서창동	74	전	1,427.00		5	1,422.00	김*례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32	서창동	산17	임	10,116.00		23	10,093.00	김*석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소 계				14,547	794.0	112.0							
합 계				17,844	1787.6	232.0							

지 장 물 조 서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총면적 (㎡)	편입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서창동	52, 508-23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63.6	22	41.6	김*명	인천시남동구서창동**	
2	서창동	508-26	창고	목재	11	11	-	-		
3	서창동	66	화장실	이동식화장실	1	1	-	이*숙	인천시서구석남동***-**	
4	서창동	65-1	담장	담장,캐노피	11.4m	8.0m	3.4	현*이	인천시남동구구월동349-90석원빌라*-***	
5	서창동	65-1	옹벽	콘크리트	13.5m	10.0m	8.5	현*이	인천시남동구구월동349-90석원빌라*-***	
6	서창동	69-4, 520-13	담장	철재	20.9m	20.9m	-	김*영	인천시남동구장수동806-3주공@***동***호	
7	서창동	520-13	담장	철재	43.3m	43.3m	-	-		
8	서창동	69-6	창고	스레트	217.9m	42.2	175.7	백*흙	인천시남동구논현동604-1넌마을신영지웰@****-****	
9	서창동	71-11	창고	철골조	41.1m	2.3	38.8	신*선		
10	서창동	520-13	화장실	이동식화장실	1.0m	1	-	-	인천시남동구서창동**	
11	서창동	71-11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49.7m	19.2	30.5	신*선		
12	서창동	73-1	창고	스레트	9.6m	7	2.6	김*석	인천시남동구서창동**	
13	서창동	508-26	목조	목조폐기물	21.6m	21.6	-	-	인천시남동구서창동**	
14	서창동	71-10	옹벽	콘크리트	67.0m	15.0m	52	이*순		
15	서창동	71-10	바닥포장	콘크리트	108	16	92	이*순	인천시남동구서창동***-	

의견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5.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9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25, 1-326, 2-6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25, 1-326, 2-613호선, 사업명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를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 6.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운연·수산·만수동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변경 없음) : 도로(중로1-325, 1-326, 2-613호선)
- 명 칭(변경 없음)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규 모(변경 없음)
 - 중로 1-325호선 : B=20m, L=1,670m
 - 중로 1-326호선 : B=20m, L= 900m
 - 중로 2-613호선 : B=15m, L= 300m
- 면 적(변경 없음)
 - 중로 1-325호선 : A=60,201m²
 - 중로 1-326호선 : A=41,874m²
 - 중로 2-613호선 : A=5,715.7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당초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의공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노선명	기 정	변 경	비 고
중로1-325호선	2010.05.20~2015.06.30	2010.05.20~2016.06.30	12개월연장
중로1-326호선	2010.05.20~2016.12.31	변경없음	-
중로2-613호선	2010.05.20.~2015.06.30	2010.05.20.~2016.06.30	12개월연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변경 없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 장 소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8.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배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976호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나. 시 행 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다. 설치장소 : 2개소

동 명	위 치
구월동	①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회전형교차로
구월동	②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교차로

※설치예정 장소 상세 위치도 별첨 참조

라.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2015. 6. 17 ~ 7. 6)

마.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바.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주차단속팀)로 문의
(☎032-453-2909)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위치 및 현장사진

①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회전형교차로

■ 위치도면



■ 현장사진



②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교차로

■ 위치도면



■ 현장사진



행 정 예 고 의 건 제 출 서

1. 행정예고 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당 사 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 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 2015-1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6.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회의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의안의 제출기한 신설 (안 제19조제2항)
 -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 “의정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목변경 (안 제33조2)
- 구정질문 조항 신설 (안 제66조2)
 - 질문방식 : 일괄질문 ·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
 -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
 - 질문요지서 집행부 도달 시간 : 구정질문 시간 48시간전
(휴무·공휴일은 제외)까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정비
 - 기타 → 그 밖의 , 자 → 사람 등

4. 의견제출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667
----------	------

제출년월일 : 2015년 6월11일

발 의 자 : 민창기의원

찬 성 자 : 최재현의원외 5명

□ 제안이유

- 회의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기한 신설 (안 제19조제2항)
 -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 “의정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목변경 (안 제33조2)
- 구정질문 조항 신설 (안 제66조2)
 - 질문방식 : 일괄질문 ·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
 -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
 - 질문요지서 집행부 도달 시간 : 구정질문 시간 48시간전 (휴무·공휴일은 제외)까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정비
 - 기타 → 그 밖의 , 자 → 사람 등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59조(준용규정)
- 인천광역시·구의회 회의 규칙 비교분석표

남동구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를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회”를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다수인”을 “2인 이상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라”으로, “법 제63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안의 제출 기한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6조 중 “저촉”을 “불일치”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의정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을 “의사진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정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정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정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약간인”을 “몇 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및 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이 일문일답 방식에 우선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구정질문 시간 48시간 전 (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해당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해당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가 있는 경우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⑦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의하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언동”을 “말과 행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제7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교육기관 기타”를 “교육기관,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제80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83조에 따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u>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u> ----- ----- ----- ----- -----.
제4조(개회식) <u>의회</u> 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개회식) <u>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 ----- -----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 ⑤ (생략)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선거등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 원으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u>다수인</u> 경우 그중 연장자로 한다.	⑥ ----- ----- <u>2인 이상인</u> -----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u>제13조의 규정에 의한</u> 개의시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u>법 제63조제1항</u> 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u>제13조에 따라</u> ----- ----- <u>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생략)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u>의안의 제출 기한은 회기시작 10일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생략)

③·④ (생략)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생략)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제22조(수정동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
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생략)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
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
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
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된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
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략)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
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제33조의2(의정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
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로부터 1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
에게 회의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없
을 때에는-----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정동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해서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안건심의) ① -----

-----대해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안의 정리) -----
-----불일치-----
-----그 밖-----
-----.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해서-----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의
사진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의정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정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42조(투표절차) ① (생략)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들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④ (생략)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13. (생략)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생략)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생략)

--그 밖에-----

-----5분 자유발언-----

② 5분 자유발언-----

-----전날-----

③ 5분 자유발언-----

제42조(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몇 명-----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그 밖의-----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⑤ (생략)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6조(공청회) ① (생략)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10. (생략)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60조(미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미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② -----제1항에 따라-----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그 밖의-----.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그 밖의-----.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미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그 밖의-----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없으면-----
-----.

제6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6조의2(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및 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이 일문일답 방식에 우선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구정질문 시간 48시간 전 (휴무·공휴 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 시간은 10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생략)

4. 음식물의 섭취와 객연

5. (생략)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생략)

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해당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해당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가 있는 경우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⑦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의하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79조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

1.-----
-----말과 행동

2.-----
-----그 밖의-----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그 밖의-----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현행과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생 략)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단체방청인은 기재사항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직원이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생 략)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③ (생 략)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음식물의 섭취나 껌연행위

5.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 행위

6.·7. (생 략)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같음)

② -----교육기관, 그 밖에-----

③ (현행과 같음)

④ -----정해진-----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각 호-----

-----대해서-----

1.-----휴대한 사람

2. -----있는 사람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있는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그 밖의-----

6.·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게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 ⑤(생략)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③ -----

-----법 제83조에 따라-----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제4항에 따른-----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제3항에 따
른-----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일부개정) 2015.04.09 조례 제1239호]

제5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 구의회 회의 규칙 비교 분석표

구 분	의회 회의 규칙			비 고
	의안의 제출·발의	시·구정에 관한 질문 방식	구정질문 송부기한	
인천광역시	-	일문일답, 일괄질문·답변, 일괄질문 서면답변, 서면질문 구두답변, 서면질 문·답변	48시간 전	
중 구	-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24시간 전	
동 구	-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24시간 전	
남 구	-	일괄질문·일괄답변	48시간 전	
연수구	-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48시간 전	
남동구	-	일괄질문·일괄답변	24시간 전	
부평구	-	일괄질문·일괄답변	24시간 전	
계양구	-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48시간 전	
서 구	회기시작10일전까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24시간 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 2015-1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6.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11월 25일에 개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 「(2014년 5월 28일, 부칙 제3조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으로 2015년부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회계연도 익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으로써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의 조기의결이 필요하게 된 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
-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준용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 (안 제3조제1항제2호)
 - 매년 11월 25일 → 매년 11월 20일로
- 특별위원장 선임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변경 (안 제11조제2항)
 - 당초 연장자 ⇒ 최다선 의원으로

4. 의견제출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68
----------	------

제출년월일 : 2015년 6 월15일

발 의 자 : 조영규 의원

제 출 자 : 문종관의원의외 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11월 25일에 개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 「(2014년 5월 28일, 부칙 제3조(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으로 2015년부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익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으로써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의결이 필요하게 된 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
-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준용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 (안 제3조제1항제2호)
 - 매년 11월 25일 → 매년 11월 20일로
- 특별위원장 선임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변경 (안 제11조제2항)
 - 당초 연장자 ⇒ 최다선 의원으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자치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남동구의회 조례 제 1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11월 25일”을 “11월 20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집회) ① (생 략) 1. (생 략)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u>11월25일</u>에 집회한다. ② (생 략) 제1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생 략) ② <u>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③ (생 략)	제3조(집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11월20일</u>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부칙 <제12687호, 2014.5.28.>

제3조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집회) ① 영 제54조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한 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 3조 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1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5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의 위탁 계약기간 규정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5일 (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32-453-5013, 5030 / 팩스 032-453-5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기관별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현황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정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72
----------	------

발의연월일 : 2015. 6. 15.

발 의 자 : 한정희 의원

찬 성 자 : 임춘원의원 외 5인

☐ 제안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운영의 위탁 계약기간 규정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함 (안제13조)

☐ 본 문 : “별첨”

☐ 신·구대조표 : “별첨”

☐ 참고자료

- 기관별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현황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대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위탁계약기간) 위탁계약기간은 <u>3년으로</u> 하되, 운영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3(위탁계약기간) ----- <u>5년 이내로</u>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대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탁계약기간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사항 없음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한정희 의원 (인)

【참고자료】

< 붙임 1 >

기관별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규정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규정

(2015. 1월 기준)

구분 기관별	법 규 명 칭	위탁기간 근거규정	위탁기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5년 이내
인천 중구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기간)	5년 이내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위탁관리)	3년 이내
인천 부평구	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시설의 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준용	5년 이내
인천 남구	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운영 및 관리위탁	3년 이내
서울 성북구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5년 이내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5년 이내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운영의 위탁 등)	5년 이내

< 붙임 2 > 관련 규정**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하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차량지원 (안 제4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5일 (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현 의원발의)

의안 번호	1669
----------	------

발의년월일 : 2015. 6. 15.

발 의 자 : 최재현 의원

찬 성 자 : 문종관 의원 외 5명

☐ 제안이유

-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하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차량지원 (안 제4조 제3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생 략)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전국 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 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u>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연평균 예산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

작성자 : 최 재 현 의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남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남동소래아트홀의 시설 활용도를 높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동구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
- 인천의 타 문예회관 수준으로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에 활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확대 (안 제9조)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예술공연 및 전시
 - ⇒ 기본시설사용료 50퍼센트 감면 → 기본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 아트홀 시설 사용료 변경 (안 별표1)

- 기존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기준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음악/행사	비 고
대공연장 -627㎡ -703석	오전		100,000	150,000	300,000	무대 403㎡ (21m*14m)
	오후		150,000	230,000	450,000	
	야간		200,000	300,000	600,000	
소공연장 -277㎡ -196석	오전		30,000	50,000	100,000	소강당 서랍식객석
	오후		50,000	70,000	150,000	
	야간		70,000	100,000	200,000	

- 변경 사용료(안)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기준	공연	대중음악/행사	비 고
대공연장 -627㎡ -703석	오전		100,000	150,000	무대 403㎡ (21m*14m)
	오후		140,000	190,000	
	야간		200,000	250,000	
소공연장 -277㎡ -196석	오전		30,000	50,000	소강당 서랍식객석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5일 (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0
----------	------

발의년월일 : 2015. 6. 15.

발 의 자 : 이유경,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남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남동소래아트홀의 시설 활용도를 높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동구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
- 인천의 타 문예회관 수준으로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에 활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확대 (안 제9조)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예술공연 및 전시
 - ⇒ 기본시설사용료 50퍼센트 감면 → 기본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 아트홀 시설 사용료 변경 (안 별표1)
 - 기존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기준	순수예술	유지컬	대중음악/행사	비 고
대공연장 -627㎡ -703석	오전		100,000	150,000	300,000	무대 403㎡ (21m*14m)
	오후		150,000	230,000	450,000	
	야간		200,000	300,000	600,000	
소공연장 -277㎡ -196석	오전		30,000	50,000	100,000	소강당 서랍식객석
	오후		50,000	70,000	150,000	
	야간		70,000	100,000	200,000	

- 변경 사용료(안)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기준	공연	대중음악/행사	비 고
대공연장 -627㎡ -703석	오전	100,000	150,000	무대 403㎡ (21m*14m)
	오후	140,000	190,000	
	야간	200,000	250,000	
소공연장 -277㎡ -196석	오전	30,000	50,000	소강당 서랍식객석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의 50퍼센트를”을 “사용료 전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제9조제3항제2호 중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를 “구”로, “공연”을 “비영리 목적의 공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제11조제2항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한다.

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제9조 관련)

1. 사용시간

구 분	시간(공연장)	비 고
오 전	09:00 ~ 12:00	※ 철야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한함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철 야	22:00 ~ 다음날 07:00	
전시실	09:00 ~ 22:00	

2.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공연	대중음악/행사	비 고
대공연장 -627㎡ -703석	오전	100,000	150,000	무대 403㎡ (21m*14m)
	오후	140,000	190,000	
	야간	200,000	250,000	
소공연장 -277㎡ -196석	오전	30,000	50,000	소강당 서랍식객석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전시실(525㎡)	1일	㎡당 200	※ 무빙월 120m / 벽체 90m	

※ 비고

- 1) 공연대관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2) 공연대관의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 동안 2회 이상의 공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3)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4)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 5)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은 매 3시간 단위로 야간사용료의 100%를 적용한다. 다만,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풍물, 순수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을 말한다.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이나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행사 대관료를 적용한다.
- 7)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 기본시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냉방비 및 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모(㎡)	사용료	비 고
연습실1	93.0	50,000	○ 1회 기준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연습실2	62.8	30,000	
연습실3	50.4	30,000	
연습실4	16.0	20,000	
스튜디오(대)	57.7	30,000	
스튜디오(소)	29.6	20,000	
문화교실1, 2	72.3	40,000	
문화교실3	91.5	50,000	
회의실	108.9	50,000	
공연장로비	400.0	50,000	
야외공연장	50.0	30,000	
분장실1(주연)	18.2	10,000	
분장실2(여)	38.8	20,000	
분장실3(남)	32.8	20,000	

다.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녹 음	방송, CF, 영화촬영	비 고
대공연장	150,000	1,000,000	방송, CF, 영화촬영 : 8시간 기준 녹음 : 1회 4시간기준

※ 녹음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하고, 철야작업시는 사용료의 150%로 하며, 녹음의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50%로 한다.

라.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기 본 사용료	비 고	
시설명						
피아노	대공연장	고급	1일	6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무대	댄싱플로어(무용매트)		1일	100,000		
	샤 막		1일	100,000		
	덧 마 루	기본50㎡	1일	50,000		
		추가	1㎡	2,000		
음향	음향콘솔		1일	70,000		
	CD Player 포함		1일	50,000		
	메인스피커(1식)		1일	70,000		
	앰프 포함		1일	50,000		
	모니터스피커(개별)		1일	20,000		
	앰프 포함		1일	20,000		
	유선마이크(다이내믹)		1일	2,000		
	스탠드 포함		1일	2,000		
	유선마이크(콘덴서)		1일	10,000		
	스탠드 포함		1일	10,000		
	무선마이크		1회	20,000		
	배터리,스탠드포함		1회	20,000		
	빔프로젝터		15,000Ansi(대)	1회		200,000
			4,500Ansi(소)	1회		100,000
	조명	기 본	대공연장	1회	50,000	
소공연장			1회	30,000		
Follow spot			1회	30,000		
Moving Light		1일/1대	30,000			
Elipsoid Light		1일/1대	2,000			
Strobe Light		1일/1대	3,000			
Par 64		1일/1대	1,000			
Par46(1세트 8대)		1일/1조	3,000			
Bank(1세트 4구)		1일/1조	3,000			
드라이아이스 기계		1일/1대	10,000			
포그 기계(포그 기계액 포함)		1일/1대	30,000			
기타	의상 및 대·소도구		1일	취득가액의 5%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사용자”라 함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제7조----- -----.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3.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u>사용료의 50퍼센트를</u>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2.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제9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 2. 3. (현행과 같음) ③ ----- ----- <u>사용료 전액을</u> -----. 1.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2. 구----- ----- <u>비영리 목적의 공연</u> -----

<신 설>

④ (생 략)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생 략)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
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
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
야 한다.

③ ~ ⑤ (생 략)

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
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잃어
버렸-----

-----.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4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이 유 경 의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면서도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부담되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주민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 보조금 지원 및 협약체결 (안 제4~5조)
- 지원계획 수립.공고 (안 제6조)
- 대상 선정 절차 및 지급 (안 제9~10조)
- 감독 및 제재 (안 제11~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5일 (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박인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71
----------	------

발의년월일 : 2015. 6. 15.

발 의 자 : 박인동 의원

찬 성 자 : 이오상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면서도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부담되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주민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2조)
- 보조금 지원 및 협약체결 (안 제4~5조)
- 지원계획 수립.공고 (안 제6조)
- 대상 선정 절차 및 지급 (안 제9~10조)
- 감독 및 제재 (안 제11~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많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②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③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 ④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 ⑤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 ⑥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⑦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 ⑧ “보조금신청자”란 신청자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

스공급시설 중 공급관과 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설치에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공급시설 설치비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액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구청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연도에 설치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 당 30세대 미만으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약이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②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한 주택취사용 또는 주택난방용과 사회복지시설용에 한하여 그 공사비의 일부를 세대신청자 또는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보조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50만원까지로 한다.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세대의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조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보조사업자에게 예산범위 이내에서 균등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본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만 매년 12월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균등 지원의 경우에도

제4조제2항에 따라 나머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지역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자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3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0000호, 2015.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단위 사업명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가구수(세대수)				
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남동구 로(동) 번길 공사종점 : 남동구 로(동) 번길		
배관연장		m		
계좌번호(은행명)		(은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갖출 서류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내역서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타 당 성 조 사 서			
공 사 명 (단위사업명)			
보조사업의 목 적			
사 업 량	가 구 수 (세 대 수)	세대	
	공급배관	배관 : m(Ø m), 정압기 : 대	
사 업 비 : 총 원			
총사업비	000000(주) 투자금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기타
원	원	원	원
타 당 성 조사결과			
년 월 일			
000도시가스(주) 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갖출 서류	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개인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 추정 내역(주소,성명,용도,등급 포함) 1부. 3. 수요가 연명부 1부.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연평균 예산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

작성자 : 박 인 동 의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18호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합니다.

■ 일 시 : 2015년 7월 1일 (수) 10 : 00

■ 장 소 : 남동구의회 본회의장 (3층)

2015년 6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한 민 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1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대행업체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 제6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 (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발의)

의안 번호	1673
----------	------

발의년월일 : 2015. 6. 16.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8명

☐ 제안이유

-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대행업체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 제6조 제3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구청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 평가대상 업체가 8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대행업체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60점 이하의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생략)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구청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 평가대상 업체가 8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대행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60점 이하의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연평균 예산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

작성자 : 신동섭 의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 폐기물처리업자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는 대행업체의 대행분야 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행업체 지도·감독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안 제6조의2)
-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분야 (안 제6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 (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32-453-5012, 5030 / 팩스 032-453-501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발의)

의안 번호	1674
----------	------

발의년월일 : 2015. 6. 16.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8명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업자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는 대행업체의 대행 분야 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행업체 지도·감독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안 제6조의2)
-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분야 (안 제6조의3)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2(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위탁분야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은 년2회 이상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의3(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분야)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분야는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확보기준 그리고 위탁 대행료의 직접노무비 지급현황 등 위탁사업 전반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생략)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6조의2(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위탁분야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은 년2회 이상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u><신 설></u>	제6조의3(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분야)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분야는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확보기준 그리고 위탁대행료의 직접노무비 지급현황 등 위탁사업 전반에 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연평균 예산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

작성자 : 신동섭 의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39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6. 30.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5. 06. 19. ~ 2015. 06. 29. (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 음식점	2010- 0199728	회사랑 안주마을	정*옥	북개동로 6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	2014.08.20.	2015.06.30.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6. 29.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5. 06.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8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16 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0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6.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95-3 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16	2009.7.6	예전 주안면과 다소면에는 돌과 우물이 많았다는 유래에서 제명	2015.6.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석정로516번기초구간에 위치하여516을 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근생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67	2009.7.6	인천과 하와이를 상징하는 인하대에서 시작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6.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인하로567번기초구간에 위치하여567을 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0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16번길	12	2012.3.28	서창남순환로의 시작지점 에서부터 약 2150m지점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6.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216번길 12기초구간에위치하여 12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단독9-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39번길	49	2009.11.16	호구포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74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6.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호구포로739번길49 기초구간에위치하여 49를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158번길	15-7	2014.7.25	서창방산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1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5.6.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서창방산로158번길 15-7기초구간에 위치하여15-7을 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근생3-1,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59	2009.7.6	인천과 하와이를 상징하는 인하대에서 시작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6.16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 인하로559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 559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6-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0	2015.6.1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3	2015.6.12.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8-2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51-1	2015.6.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5-8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6.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1	하수도	구월동 700-5	구월동 827	매소홀로 (대2-7호선)	832	8,473	2013. 8.29	
변경	1	하수도	구월동 700-5	구월동 827-9	매소홀로 (대2-7호선)	832	8,491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사 유
1	하수도	- 면적 : 8,473㎡→8,491㎡(증18㎡) - 기점 : 구월동 700-5번지 일원 - 종점 : 구월동 827-9번지 일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운영을 위한 시공방법(우·오수관로 병행시공→분리시공) 변경으로 일부 구간 도시계획시설 선형 및 면적 변경

다.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배치)

2. 실시계획(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82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매소홀로 하수암거]
- 명 칭 : 매소홀로 하수암거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변경있음)

- 하수도시설(기정) : $A=9,253\text{m}^2$
(변경) : $A=9,316\text{m}^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도시공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기정 : 2013.11.15. ~ 2015.05.31.
- 변경 : 2013.11.15. ~ 2015.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 「붙임」

사.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배치)

변경없음	41	구월동	838-68	천	1,851.0		48.0	1,803.0		건설교통부			방류부
기정	42	구월동	1084	구	9,901.0		30.0	9,871.0		농림부			방류부
변경	42	구월동	1084	구	9,901.0		41.0	9,860.0		농림부			
기정	43	구월동	1072-26	천	2,844.0		11.0	2,833.0		건설교통부			방류부
변경	43	구월동	1072-26	천	2,844.0		14.0	2,830.0		건설교통부			
변경없음	44	구월동	828-2	천	912.0		5.0	907.0		인천광역시			방류부
신규	45	구월동	827	전	270.0		18.0	252.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그랜드빌 비0*호	김**	국민**** 공단		압류
합계			당초		83,207.0	8,150.0	1,103.0	73,954.0					
			변경		83,366.0	8,150.0	1,166.0	74,050.0					

■ 지장물조서(변경없음)

번호	동 명	지 번	종 류	구조 및 규격	총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1	남동구 구월동	827, 827-9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354.0	354.0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그랜드빌 비0*호	김**	